

「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3. 10. 1.) →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뀐 9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95/compare?from=236&to=237>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38:21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방법) 전임 교원의 임용은 특별 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채용하고, 공개 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 채용에 의할 수 있다.	제2조(임용방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1. 전임교원 공개 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성심사위원회 ㉮ 구성: 각 모집 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과 교수 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 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공교수로 한다). ㉮ 역할: 기초 심사(지원 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 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 발표 실적, 공개강좌) ② 공정성심사위원회 ㉮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 교원의 공개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2. 상기 위원회의 설치 시기는 모집 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 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 심사위원회 ㉮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 심사위원회 ㉮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3.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조(공개 채용 심사) 공개 채용 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1. 기초 심사: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 자격 기준 및 연구 실적 심사 기준에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①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②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2. 전공 심사 및 면접 심사: 기초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 생활, 본교 교육 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 능력 등 대학 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①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 실적, 학력,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1.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2.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현행	개정안
공개강좌 ② 교원인사위원회: 교육_경력 및 연구_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3. 공정성 검토: 공정심사위원회는 신입_교원의 공개_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3. 공정성 검토: 공정심사위원회는 신입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제5조(자격_심사) 1.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_교회 담임_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_대상으로 한다. 2. 교육법_고등교육법_제16조, 교육공무원법_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_자격_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박사_학위_소지자를 심사_대상으로 한다. 4. 특수_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_채용_분야)에 한하여 박사_학위_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5.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_증명서에 의한다.	제5조(자격심사) ①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교육법 『고등교육법』제16조, 『교육공무원법』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연구실적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제6조(심사_기준) 신임_교원 평가 및 심사_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_평균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_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점은 위원장 및 심사_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_경력) 교육 및 연구_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_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_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_기간 및 수학_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_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_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_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단, 학위_논문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만을 연구_실적에 포함시키며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평정_방법) 심사_기준과 심사_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_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_점수를 평정_점수에 적용하고, 동일_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_점수를 평정_점수에 적용한다.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점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 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5.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 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6.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 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용_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1. 분야별 임용_후보자는 전 영역에서 70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다. 2. 신입_교원 평가 및 심사_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본 대학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3. 대학_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_채용에 관한 심사_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_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_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4-12-09> ②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우리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③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제출_서류) 임용_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_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_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_증명서 각 1부 5. 연구_실적물 200% 이상	제8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연구실적물 200% 이상
제9조(계약_임용) 본 대학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본 대학 교원_인사_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_조건에 관한 세부_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_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_교원인사_규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육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 신규 임용에"를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용방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 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 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3.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입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1.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2.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 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3.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입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심사) ①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교육법 『고등교육법』제16조, 『교육공무원법』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연구실적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⑦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신입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점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5.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 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6.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 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②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우리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③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연구실적물 200% 이상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